

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(시범단지2)·S6구역(장안타운4) 결합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

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번지 일원 및 분당동 113번지의 ‘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(시범단지2)·S6구역(장안타운4) 결합 재건축사업’에 대하여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6. 29.

성 남 시 장

1.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
- 나. 명 칭 :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(시범단지2)·S6구역(장안타운4) 결합 재건축사업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법인명 : 한국자산신탁(주)
- 나. 대표자 : 신찬혁
- 다.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

3.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92번지 일원 및 분당동 113번지
- 나. 면 적 : 284,611.6㎡

4.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예정일 : 2026년 6월
- 나. 준공예정일 : 2035년 7월

5. 참고사항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(2025.10.15. 성남시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)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(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예외사항 확인 필요)
- 나.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(☎031-729-370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